

2022. 10. 6. (목) 실시
국기원장선거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행위 안내

202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I. 선거운동의 정의 및 방법

1. 선거운동의 정의	1
2.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1
3. 선거운동기간	1

II.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등

1.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금지	4
2. 호별방문 등의 금지	6
3.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7
4.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8
5. 국기원 임직원의 중립의무 등	8

III. 위반행위 조사 및 벌칙규정

1. 위반행위 조사	10
2. 벌칙규정	11

IV. 부 록 (관련 법규 등)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기원 정관」 · 「원장선거관리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예에 따라 처리함.(약정서 §4)

※ 본문에 게재된 사례는 조합장선거 등 각종 위탁선거 등과 관련됨.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행위 안내

I 선거운동의 정의 및 방법

1 법규요약

1) 선거운동의 정의(원장선거관리규정 §24)

- 선거운동 :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원장선거관리규정 §25)

- 주 체 : 후보자 및 신고된 선거사무원(3인 이내)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방 법

- 전화(송화자, 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전자우편(컴퓨터 및 휴대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
- 명함(길이 9cm × 너비 5cm 이내)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진행방법 : 사전녹화영상 및 자기소개서를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시
 - 제출방법 : 사전녹화영상을 10분 이내로 제작하여 원장선거관리규정 [별지9] 서식, 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 제출기한 : 2022. 9. 30.(금)[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4일 이내]
 - 게시기간 : 2022. 10. 1.(토) ~ 10. 6.(목)

- 발표내용 : 국기원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 등

※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선거운동기간(원장선거관리규정 §26)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2. 9. 27. ~ 10. 5.)

Tip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2] 관련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통상의 업무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Tip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행위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 표현이 없이도 그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음. 문제된 행위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참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함.

-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 하는 행위
 - ⇒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 하는 때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사업활동을 병자하여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인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판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 선고 2008고단969 판결)

II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등

1.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금지

① 법규요약(원장선거관리규정 § 27①)

○ 주 체 : 누구든지

○ 내 용

-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선거인에 포함

※ 가족의 범위

- ① 선거인의 배우자
- ② 선거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③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됨.

Tip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제공의 의사표시'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결정).

② 관련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의 홍보물을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과 관련된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 같은 날 전화하여 그 입후보예정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인의 사무실에서 “그 후보자가 중앙회장을 하면 잘 할 것 같다” 면서 현금을 신문지 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연합회의 회장인 선거인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기로 약속 받은 후 해당 연합회의 이사회에 참석한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인 회원 모임의 회장에게 “네가 회장이니 회원들 상대로 좀 해 달라. 선거일이 가까워서 10만원씩 돌리면 안 되겠냐” 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
- 선거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장점을 설명 하고 끝이어 그 곳을 방문한 후보자를 소개시켜 줌은 물론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자 “편지다” 하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7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을 찾아가 선거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상의에서 현금이 든 봉투 1개를 꺼내 선거인에게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네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10고단773 판결)
-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의 집을 찾아가 선거에 출마 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 산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고단1767 판결)

2. 호별방문 등의 금지

① 법규요약(원장선거관리규정 § 27②)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해
- 금지내용
 -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Tip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戶)’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2007. 3. 15. 선고 대구고등법원판결 2007노38)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② 관련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선거인의 사무실, 가정집을 방문하여 선거인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위
 - ※ 선거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경우,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경우도 역시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연합회 사무실, 호텔, 식당 등에 모이게 하는 행위

3.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 금지

① 법규요약(원장선거관리규정 § 27③)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시기 : 언제든지
- 내 용
 - 원장선거와 관련해 전화, 문자, 명함,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② 관련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2. 11. 15. 선고 2002노581 판결)
-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4.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① 법규요약(원장선거관리규정 § 27④ ~ ⑥)

○ 주 체 : 후보자

○ 내 용

-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음.

- 선거사무원 3인 이내로 둘 수 있음.

※ 교체선입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6명을 넘을 수 없음.

※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음.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선거사무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1일 10만원 이내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의2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5. 국기원 임직원의 중립의무 등

① 법규요약(원장선거관리규정 § 30)

○ 주 체 : 국기원 임직원 등(국기원 정관 제6장부터 9장에 소속된 자 포함)

※ 정관 6장 ~ 9장 : 세계태권도연수원, 태권도연구소, 태권도 시범단 및 각종 위원회

○ 내 용

-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 준수

※ 국기원 직원이 원장 선출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또는 행정보조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시 국기원 상벌위원회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② 관련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임직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임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Ⅲ 위반행위 조사 및 벌칙규정

1. 위반행위 조사 등

① 위반행위 조사(위탁선거법 § 73)

-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수거권, 동행·출석요구권
- 조사장소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②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위탁선거법 § 65)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그 밖의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금지
- 폭행·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금지
-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위반행위 발생 시 조치(원장선거관리규정 § 28 및 약정서 § 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관리규정」 제28조·제30조에서 정한 제재수준을 포함한 ‘위반행위 조사결과’를 통보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제재수준을 존중함.
-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기원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게시할 수 있음.

④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원장선거관리규정 § 48)

- 누구든지 위반사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약정서 § 12)

-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2. 벌칙규정(원장선거관리규정 § 28)

- 국기원장선거에 관하여 정관 및 원장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
-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선거인의 선거권 박탈
 - 국기원 상벌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 각종 자격의 정지 제명 조치 및 각종 증명서의 교부 제한
 -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
-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
 -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국기원 홈페이지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각 제재는 동시에 처할 수 있음.

원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 7. 19.)

제5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23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 ①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10일간으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원장선거를 실시하며, 선거일 등은 선거일 전 25일까지 정하고,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9.>

제24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25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 ① 후보자, 선거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거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5. 27.>
 1. 전화를 이용해 송화자,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3. 전자우편(컴퓨터 및 휴대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개정 2022. 5. 27.>

4. 명함(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개정 2022. 8. 18.>

5.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단, 온라인투표 시 사전녹화영상을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재) <개정 2022. 5. 27.>

② 제1항 제5호의 소견발표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개시 전에 투표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소견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5. 27.>

2.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 등에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연설 또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해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소 등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등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5. 누구든지 소견발표회장에서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 등을 게재한 표지물을 지닐 수 없다.

③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견발표 사전녹화영상은 후보자가 10분 이내로 제작하여 **【별지 제9호 서식】**, 자기소개서와 함께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4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국기원 홈페이지에 영상 및 자기소개서를 게시한다. 다만 제출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것은 접수 후 즉시 게시한다. <신설 2022. 8. 18.>

제26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원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사람
-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원장선거와 관련해 전화, 문자, 명함,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선거사무소는 후보자가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은 3인 이내로 들

수 있으며,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5. 27., 2022. 8. 18.>

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7., 개정 2022. 8. 18.>

⑥ 선거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1일 10만 원 이내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5. 27., 개정 2022. 8. 18.>

제28조(벌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선거에 관해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후보자에 한정한다)

나. 선거인의 선거권 박탈

다. 국기원 상벌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

라. 추후 국기원 관련 모든 행사, 사업, 심사, 자격 취득 등에 응시, 참여 제한과 태권도 단체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태권도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에 한해 적용한다)

마. 국기원을 통해 취득한 품·단, 사범, 심판, 심사위원 등 각종 자격의 정지, 제명 조치 및 각종 증명서의 교부 제한

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동시에 처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정한다)

나.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온라인투표의 경우 국기원 홈페이지에 게시) <개정 2022. 5. 27.>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동시에 처할 수 있다.

- ② 제21조 제2항 제5호의 서약서(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인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 취소가 된다.

제29조(공정선거지원단 구성) (생략)

제30조(국기원 임·직원 등 중립의무 등)

- ① 국기원 임·직원 등(국기원 정관 제6장부터 9장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기원 직원이 원장 선출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또는 행정보조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립의무 준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5. 27., 2022. 8. 18.>
- ②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 임·직원이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국기원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개정 2020. 12. 9.>